

# 파일럿 개발 용역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각 당사자 사이의 파일럿 개발 용역에 관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당사자)

### 1. 발주자(이하 “회사”)

- 성명(또는 상호): 소식연구소 (대표: 김은향)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86, 3층 302-C호
- 연락처: 010-3046-6454
- 이메일: [eunhyang90218@gmail.com](mailto:eunhyang90218@gmail.com)

### 2. 수행자(이하 “개발자”)

- 성명: 임단
- 연락처: 010-2262-0039
- 이메일: [bulfroginkorea@gmail.com](mailto:bulfroginkorea@gmail.com)

## 제2조 (지위)

- 개발자는 본 계약에 따라 독립된 **프리랜서/용역 제공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상시 직원)가 아님을 서로 확인한다.
- 개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결정한다.

## 제3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파일럿 기간: 약 2주)
- 양 당사자의 서면(전자우편 포함)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 (업무 범위 및 접근 권한)

1. 개발자는 회사가 운영·개발 중인 앱/서비스(이하 “앱”)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예시)를 수행한다.
    - a. 기존 **타이머 → 포만감 → 기록** 루프 코드 구조 분석 및 정리
    - b. 타이머/페이지 이동 관련 버그 수정
    - c. 메트로놈/UX 관련 개선안 제안 및 구현
    - d.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파일럿 범위 내 개발 업무
  2. 회사는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발자에게 아래와 같은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a. 소스코드 저장소(GitHub 등) 접근 권한
    - b. 개발/스테이징 환경 및 관련 계정
    - c. 설계 문서, 노션 페이지 등 내부 자료
  3. 개발자는 부여받은 접근 권한을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용도, 제3자 제공, 사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 

## 제5조 (보수 및 지급)

1. 회사는 개발자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가로 총액 금 오십만 원 (₩500,000)을 지급한다.  
(필요 시 세법상 3.3% 원천징수 등은 별도 처리)
  2. 보수 지급 시점은 파일럿 종료 후 **7일 이내로** 한다.
  3. 본 조의 보수에는 개발자가 본 계약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하는 시간·노력·기술력 등에 대한 일체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제6조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1. 개발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앱과 관련하여 개발·작성한 모든 코드, 문서, 설계, 기획, 아이디어, 노하우, 그래픽, 기타 산출물(이하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이 **회사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2. 개발자는 산출물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으며, 회사가 산출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정·복제·배포·상용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 
3. 다만, 개발자가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적인 개발 역량, 개인적인 노하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라이브러리/툴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 

## 제7조 (비밀유지의무)

1. “비밀정보”란, 회사가 개발자에게 제공하거나 개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앱의 소스코드,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
    2. 사용자 정보(실명, 연락처 등 식별 정보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로그, 통계
    3. 사업계획, 투자 관련 자료, 재무 정보
    4. 코칭/프로그램 설계 문서, 회의록, 내부 노션 페이지 내용
    5. 기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기술·영업·운영상 정보
  2. 개발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효하다.
  4. 개발자는 비밀정보의 무단 유출 또는 오·남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 제8조 (보안 및 계정 관리)

1. 개발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정(ID, 비밀번호, API 키 등)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정 유출, 도난, 해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개발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중지할 수 있다.
- 

## 제9조 (겸업 및 타사와의 관계)

- 개발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이  
본인의 기존 근로계약, 취업규칙, 겸업/겸직/경업금지 조항 등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 만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개발자는 본인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 제10조 (계약의 해지)

-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심각한 보안 사고, 명백한 업무 불성실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 제6조(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귀속)
    - 제7조(비밀유지의무)
    - 제8조(보안 및 계정 관리)
    - 제9조(겸업 및 타사와의 관계)  
의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 제11조 (기타)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의 증거로, 양 당사자는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계약일: 2025년 12월 10일

**회사(발주자)**

성명(또는 상호): 소식연구소 (대표: 김은향)

서명(또는 날인): \_\_\_\_\_

**개발자(수행자)**

성명: 임단

서명(또는 날인): \_\_\_\_\_